

결 정

2018 - 2002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3.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주 문

매일경제 2017년 12월 9일자 A32면 「평창 라마다 레지던스 공급공고/10년간 7% 확정 수익 보장」 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2월 13일자 A9면 「평창 라마다 호텔&스위트 분양속보/10년간 7% 확정 수익 보장」 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2월 15일자 B8면 「평창 라마다 호텔&스위트 분양속보/10년간 7% 확정 수익 보장」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매일경제,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들은 평창의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26㎡, 39㎡의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월세가 각각 113만원, 165만원이라고 선전하면서 『10년간 연 7%의 확정 수익보장』 라는 표현으로 임대수익을 장기적으로 확정 보장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현재 이자율로는 높은 편인 연 7% 임대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강희	강희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